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1. 27 선고 2019가단57276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

담당변호사 신가영, 신상훈, 김지혜, 김우찬

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동환

변론 종결 2020. 11. 13.

판결 선고 2020. 11. 27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,005,199,205원 및 그 중 19,021,730원에 대하여는 2019. 9. 10.부터, 928,226,387원에 대하여는 2019. 7. 4.부터 각 2020. 1. 22.까지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주식회사 D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 한도거래계약을 체결하고, 소외 회사가 별지 표 '(나)피보험자'란 기재 각 피보험자(이하 '이 사건 각 피보험자'라 한다)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 발행 보증보험증권을 위각 피보험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위 한도거래계약에 따른 별지 표 순번 1 내지 52 기재 각 보험계약과 같은 보증보험계약(이하 '이 사건 각 보험계약'이라 한다)을 각 체결하였으며,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
한도거래상품	한도거래금액	보험기간
이행(계약, 하자, 선금급, 지급)보증 보험	금 1,500,000,000원	2017.6.22.-2018.6.21.

나.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피보험자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즉시 변상하되, 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.

다.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피보험자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, 원고는 위 각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별지 표 '(바)보험금지급일'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표 '(사)지급보험금'란 기재 각 해당 보험금을 같은 표 '(나)피보험자'란 기재 각 해당 피보험자에 게 각 지급하였다.

라. 현재 소외 회사의 잔여 구상금 채무는 별지 표 기재 내역과 같이 원리금 합계 1,005,199,205원, 원금 잔액 합계 947,248,117원이며, 별지 표 순번 1 '(차)지연손해금'란 기재 지연손해금은 2019. 9. 9.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산정한 것이고, 나머지 별지 표 순번 2 내지 52 '(차)지연손해금'란 기재 각 지연손해금은 모두 2019. 7. 3.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산정한 것이다.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 연 6%, 그 다음날부터 연 9%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,005,199,205원 및 그 중 별지표 순번 ① 보험계약 원금잔액 19,021,730원에 대하여는 2019. 9. 10.부터, 나머지 보험계약의 원금 잔액 합계 928,226,387원에 대하여는 2019. 7. 4.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0. 1. 22.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.

판사 유지현